## 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4]

##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(제32조제1항 관련)

구분	자격요건
1.	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(이하 이 표에서 "대학원"이라 한다)
1급정사	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서	나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・도서관학 외
	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	다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	라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
	람
	1)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・연구 경력
	2)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
	마.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
	1)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
	2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(이하 "지정교육기관"이라
	한다)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(이하
	"지정교육과정"이라 한다) 이수
2.	가. 대학[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
2급정사	문대학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]에서 문헌정보학
서	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
	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	나.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	다.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
	득한 사람
	라.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・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
	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	마.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
	바.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
	력을 모두 갖춘 사람
	1)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·연구 경력
	2)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
	사. 제3호다목에 따른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
	갖춘 사람
	1) 1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
	2)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

- 3. 준사서 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(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  - 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지정교육 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  - 다. 대학을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

비고

- 1. 위 표에서 "도서관 관련 근무·연구 경력"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
  - 가. 도서관 관련 근무 경력: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
    -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
      - 가) 국공립 공공도서관
      - 나) 사립 공공도서관(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만 해당한다)
      - 다) 대학도서관
      - 라) 학교도서관
      - 마) 전문도서관
      - 바) 특수도서관
    - 2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
    - 3)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
  - 나. 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: 다음의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
    - 1)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)
    - 2) 전문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)
    - 3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연구기관
      - 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    - 나) 법인
  - 2.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